

#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1163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9. 5. 1  
다. 상 정 의 결 일 자 : 2009. 5. 13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정이유

대형 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예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로 명시함(안 제2조)
- 나. 미술장식의 설치 신청은 건축허가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계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고성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구성 등을 정함.  
(안 제9조~ 안 제16조)

### 4.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9-247호(2009. 3. 13 ~ 2009. 3. 31)  
- 의견제출사항 없음
- 나.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제15조

다. 예산조치 :

라. 합 의 : 관련실과 합의됨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대형건축물(1만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간을 설치권장토록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건축주는 관련 법령에 의거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건축허가 사전결정 또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절차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였고,
  - 안 제7안에서 안 제8조까지는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규정함에 있어 “영 1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에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2” 그리고 “영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기능·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지만, 서민들의 부담과 관련되는 안 제7조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에 관하여는 인근 시군과 비교 또는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6. 질의 및 답변 :

- 문 : 서민부담과 관련되는 미술장식에 소요되는 금액비율이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많은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이 9명으로 규정하고서 아래 내용상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 이를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 답 : 금액비율에서 우리군은 타시군에 비하여 낮은편에 속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중 제11조 제3항제5호의 “전문가 4인” 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 문 : 본 조례안은 서민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시행을 늦추는 것이 어떻는지요 ?

◎ 답 : 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보통 2년으로 하는데 본 조례안에는 3년으로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답 : 다소 전문성이 필요하고, 관련법에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 2009. 5.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